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개발㈜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그 사업을 계속 행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업양도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조세심판 결정례]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사 건	조심2016중OO (2017.3.13.)
세 목	양도소득세
결 정 유 형	취소

주문

OO세무서장이 20XX.XX.XX. 청구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XX.XX.XX. ○○ 소재 답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XX.XX.XX. 양도한 후 20XX.XX.XX.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XX 년부터 20XX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총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라 하여 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제외시 경작기간 7년 8월) 하고 청구인의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XX.XX.XX. 청구인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부친의 뒤를 이어 오로지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농협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농협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8년 1개월 동안 영농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기에 취업일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억울한 일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조합장 취임일 시점 이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업연도의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경작기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종합 과세하는 「소득세법」 특성상 거주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위한 시간적 단위를 정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은 청구인과 같이 신규 취업자인 경우에만 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취업일)부터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과세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망의 경우와 출국의 경우만을 예외적인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주장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4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⑭ 제4항 · 제6항 ·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중 략)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5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7항, 제68조 제7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일관되게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해 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인 점, 청구인은 19XX년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고교 졸업 후 줄곧 영농에 종사하다가 20XX.XX.XX. ○○농업협동조합에 취업하였고, 쟁점토지를 20XX.XX.XX. 취득하여 20XX.XX.XX. 양도하였는바, 취업일 현재 이미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조세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이미 충족된 과세감면요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기간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1.1.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글.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 건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 국 결 과	헌법불합치

결정요약문

1.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중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중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2011. 5. 19.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2013. 3. 22.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두 조항을 합하여 '신법 조항'이라 한다)은 '군인